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이은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76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10월 14일
발 의 자 :이은주 의원(1명)
찬 성 자 :김상훈, 김호진, 성중기,
송도호, 송아량, 우형찬,
이광호, 이승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도로에서 발생하는 점유 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사 편의성 위주가 아닌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점유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시행자는 변경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함(안 제6조 제4호)
- 나.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시 필요할 경우 자문회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 다. 자문회의는 15명 이상 30명이내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월2회 이상의 소집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제5항)
- 라.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6항)

- 마.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제8항)
- 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함(안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고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명 이상 15명”을 “15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회의”를 “2회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5명 이상의 출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원상회복)”을 “(원상회복 및 복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 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위원을 대동할 수 있고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2. (생략)

③·④ (생략)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월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생략)

<신설>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5명 이상 30명 -----

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2회 이상의-----

⑥ ----- 5명 이상의 출석으로-----

⑦ (현행과 같음)

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

⑧ (생략)

제13조(원상회복) 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주부서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3조(원상회복 및 복구계획) ①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